

상생벤더구매론 약정서

(1차 협력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_____(이하 “1차 협력기업”이라 함)은 1차 협력기업에게 물품 및 용역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납품한 2차 협력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1차 협력기업이 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이하 “원 약정서”라 함)에 추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 등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약정은 1차 협력기업이 은행의 「상생벤더구매론」 결제제도를 이용하여 2차 협력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기업”이라 함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협력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2. “1차 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은행과 상생벤더구매론 약정(1차 협력기업용)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
3. “2차 협력기업”이라 함은 1차 협력기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은행과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2차 협력기업용)을 체결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4. “벤더기업”이라 함은 은행과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벤더기업용)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2차 협력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기업 또는 순차적으로 직전 N차 협력기업에게 납품하는 N+1차 협력기업을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의미합니다. 벤더기업을 구분하여 지칭할 때에는 N차 벤더기업을 “상위 벤더기업”, N+1차 벤더기업을 “하위 벤더기업”이라 합니다.
5. “지급승인명세”(이하 “승인명세”라 함)라 함은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1차 협력기업이 은행에 전송하는 구매자료를 말하며, 2차 협력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지급승인이 필요합니다.
6. “지급승인금액”(이하 “승인금액”이라 함)이라 함은 승인명세 상 1차 협력기업이 2차 협력기업에게 지급할 구매대금을 말합니다.
7. “결제일”이라 함은 1차 협력기업이 구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일자로서, 승인금액의 상환일을 말합니다.
8. “선입금”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2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이 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할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제9호의 벤더입금을 포함하여 지칭할 때에는 “선입금 등”이라 합니다.
9. “벤더입금”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2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이 선입금한 대금을 벤더기업 또는 하위 벤더기업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벤더승인명세”라 함은 하위 벤더기업에게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2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이 은행에 전송하는 구매자료를 말하며, 하위 벤더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벤더승인이 필요합니다.
11. “기업인터넷뱅킹”이라 함은 기업뱅킹, CMS 등을 말합니다.

제 3 조 (승인명세의 전송)

승인명세의 전송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합니다.

1. 승인명세는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 등의 납품대금 결제 용도로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승인명세의 항목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3. 승인명세의 금액은 최소 일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승인명세의 전송 시 1차 협력기업의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상생일반구매론에 의한 지급승인명세를 포함합니다)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5. 승인명세 상 결제일은 선택한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6. 승인명세의 전송은 기업인터넷뱅킹, 펌핑서비스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관리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승인명세등록신청서” 및 해당 승인명세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7. 은행은 지급승인이 있는 해당 명세를 2차 협력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지급승인)

- ① 은행은 1차 협력기업의 승인명세에 대하여 2차 협력기업을 대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이 지급승인을 하는 때에, 은행은 1차 협력기업이 2차 협력기업에게 부담하는 대금 지급 채무를 이 약정에 의해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정하며, 은행은 승인명세의 내용대로 2차 협력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은행이 채무인수하는 경우에는, 2차 협력기업이 은행과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을 체결한 때에 지급승인에 따른 채무인수를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④ 2차 협력기업의 포괄적 승낙은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급승인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며, 2차 협력기업은 건별 지급승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모든 지급승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해당 승낙의 의사표시를 철회,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⑤ 1차 협력기업은 은행의 지급승인으로 말미암아 2차 협력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은행에 대하여 승인명세와 동일한 내용의 별도의 대금 지급 책임을 새로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⑥ 제2항의 지급승인이 있는 경우 은행은 상생일반구매론에 의한 지급승인에 따라 은행이 1차 협력기업에게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이에 따라 1차 협력기업의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은 지급승인 금액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며, 해당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⑦ 지급승인금액의 총잔액은 원 약정서의 여신(한도)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별 지급승인은 제3조 제4호에서 선택한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제 5 조 (승인명세 등의 변경 및 취소)

- ① 1차 협력기업은 은행의 지급승인이 있기 전에는 승인명세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지급승인 이후에는 2차 협력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하자, 전산조작 오류, 기타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은행에 지급승인의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승인명세의 판매기업(2차 협력기업) 및 승인금액은 변경할 수 없고 취소 후 새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승인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1. 2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이 승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선입금, 벤더입금 또는 벤더승인을 실행한 경우
 2. 결제일이 도래한 경우
- ③ 지급승인이 취소된 경우, 은행은 취소된 지급승인에 대하여 대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1차 협력기업이 지급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2차 협력기업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급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④ 허위매출, 현금용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은행은 강제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일체의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지급승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의 지급승인이 제한됩니다.

1. 1차 협력기업이 이 여신 또는 은행과 약정한 다른 여신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2. 1차 협력기업에 대하여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가 등록된 경우
3. 구매기업 또는 1차 협력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은행협약, 기타 유사한 협약 등에 근거하여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4. 1차 협력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등 1차 협력기업이 은행의 내규 등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인 경우
5. 지급승인으로 인하여 지급승인금액의 총 잔액이 원 약정서의 여신(한도)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6. 허위매출, 현금용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를 전송하거나 기타 이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7.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2차 협력기업을 판매기업으로 하여 승인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8. 원 약정서 제 6조(감액, 정지)에 의하여 1차 협력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9. 승인명세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지급제한으로 지급보류 등록을 한 경우
10. 구매기업이 전송한 승인명세 상 거치기간이 설정된 경우
11. 매매보호거래시 해당 승인명세에 대하여 구매기업이 권리이전(인수)하지 않은 경우
12.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 7 조 (벤더승인)

- ① 2차 협력기업은 벤더기업에 대하여 물품 등의 납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 벤더승인명세를 송부하여 자신에 대한 은행의 지급승인을 포기하고 벤더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지급승인(벤더승인)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이 벤더승인을 하는 경우, 은행의 2차 협력기업에 대한 지급승인은 소멸하고, 은행은 벤더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2차 협력기업이 벤더기업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 지급 채무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보며, 은행은 벤더승인명세의 내용대로 벤더기업에 대하여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은행이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2차 협력기업은 벤더기업으로, 지급승인은 벤더승인으로 봅니다.
- ④ 벤더승인은 승인금액 전액에 대하여만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금액을 분할하여 요청할 수 없습니다.
- ⑤ 은행의 벤더승인으로 말미암아 2차 협력기업이 벤더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1차 협력기업의 은행에 대한 대금 지급 책임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⑥ 벤더기업은 하위 벤더기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회차에 제한 없이 벤더승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⑦ 벤더승인명세와 관련한 사항은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5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1차 협력기업은 2차 협력기업으로, 2차 협력기업은 벤더기업으로 봅니다.

제 8 조 (벤더승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의 벤더승인이 제한됩니다.

1. 허위매출, 현금용통성거래 등 기간상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납품대금 결제용도 외의 벤더승인명세가 전송된 경우
2.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벤더기업을 판매기업으로 하여 벤더승인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3. 벤더승인명세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지급제한으로 지급보류 등록을 한 경우
4. 2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이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을 위반한 경우
5. 1차 협력기업, 2차 협력기업, 벤더기업의 요청이 있거나 은행의 여신관리 목적상 필요한 경우
6. 기타 제6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1차 협력기업에 대하여 개별 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
7.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 9 조 (선입금 등)

- ① 2차 협력기업 및 벤더기업은 지급승인 또는 벤더승인을 받은 경우 결제일 전에 제11조에 따른 이자를 차감하고 선입금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청하거나, 선입금 없이 결제일에 만기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2차 협력기업, 벤더기업은 지급승인 또는 벤더승인을 받은 경우 결제일 전에 자신의 하위 벤더기업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벤더입금)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선입금 등은 지급승인, 벤더승인이 있을 날로부터 결제일 전 은행 영업일까지 할 수 있고, 선입금 가능일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선입금 등이 가능합니다.



- ④ 선입금 등은 지급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횡수에 상관없이 최저 일만원 이상 분할신청이 가능합니다.
- ⑤ 선입금 또는 벤더입금 신청시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필수정보로 구성합니다.
- ⑥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는 세금계산서 종류,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세금계산서(승인)번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세금계산서세액, 세금계산서합계금액 및 품목으로 구성합니다.
- ⑦ 선입금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요청에 응하기로 하되, 제6조 및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선입금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개별 대출의 실행)

- ① 지급승인에 따른 개별 대출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실행하기로 합니다.
 1. 2차 협력기업에 의한 선입금 등이 실행된 때
선입금일 또는 벤더입금일에 1차 협력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개별 대출을 실행하여 2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의 입금계좌로 입금합니다.
 2. 벤더승인이 있은 후 벤더기업에 의한 선입금 등이 실행된 때
선입금일 또는 벤더입금일에 1차 협력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개별 대출을 실행하여 벤더기업 또는 그 하위 벤더기업의 입금계좌로 입금합니다.
 3. 선입금 등 없이 만기입금하는 경우
결제일에 1차 협력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당일 만기대출을 자동 실행하여 2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의 입금계좌로 입금합니다.
- ② 개별대출의 만기일(승인명세 상 결제일과 동일합니다)은 원 약정서에서 정한 대출(한도) 약정기일을 초과할 수 있으나 약정기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대출 이자 및 수수료)

- ① 대출이자의 계산은 원 약정서 “제1조 거래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대출 이자는 선입금 등을 요청하는 2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이 부담하되, 지연배상금은 1차 협력기업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로서 결제일 당일 중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③ 벤더입금시에는 벤더입금 건별 벤더취급수수료를 부과하며, 벤더입금 신청시 부담주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수수료 징구방법, 시기, 금액 등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기로 하며,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 또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제 12 조 (결제계좌의 지정)

상생벤처구매론 취급을 위한 본인의 결제계좌는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주)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로 약정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제 13 조 (개별대출의 상환)

- ① 개별 대출의 상환은 개별대출금의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자동상환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합니다.
 1. 구매기업의 상생일반구매론에 따른 지급승인을 근거로 한 경우
승인명세 상 결제일에 구매기업을 채무자로 한 상생일반구매론을 실행하여 1차 협력기업의 개별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2. 구매기업과 1차 협력기업, 은행간 상생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약정 및 협약이 체결되거나 상생 e-안심팩토링대출 관련 약정 및 협약이 체결되어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한 경우
 - 가. 1차 협력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인 경우(WOR 방식)
관련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 만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또는 당일만기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을 실행하여 1차 협력기업의 개별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 나. 1차 협력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는 방식인 경우(WR 방식)
관련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이 미결제하는 경우 1차 협력기업의 개별 대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②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에 대하여 선입금 등이 실행된 경우에는 그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압류 및 지급보류 등)

- ① 이 약정과 관련한 매출채권 또는 은행에 대한 대금 지급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압류”라 합니다)이 송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1. 1차 협력기업을 제3채무자로 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1차 협력기업에게 압류가 송달된 경우
 - 가. 은행의 지급승인이 있기 전인 경우, 1차 협력기업은 관련 승인명세를 전송하지 않기로 합니다.
 - 나. 은행의 지급승인이 있은 후인 경우에는 지급승인으로 인하여 은행이 해당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2. 은행에 대한 2차 협력기업의 대금 지급 채권에 대하여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가 송달된 경우
 - 가. 은행의 지급승인이 있기 전인 경우에는 은행이 채무 인수하기 전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나. 은행의 지급승인이 있은 후인 경우, 은행은 즉시 지급보류등록을 합니다.
 3. 압류가 장래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1차 협력기업은 관련 승인명세를 전송하지 않기로 합니다.
 4. 지급보류 등록된 지급승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합니다.
 - 가. 결제일 도래시 1차 협력기업 명의의 대출을 실행하여 은행의 미지급금 계정에 예치하기로 합니다.
 - 나. 은행의 미지급금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1차 협력기업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위반하여 승인명세를 전송하고 은행이 압류 사실을 모르고 이 약정에 의한 거래가 실행된 경우 1차 협력기업이 변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5 조 (이용시간)

① 은행 영업점을 통한거래는 은행 영업시간중 가능하며,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평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조회	24시간	가능
판매기업 등록	08:00~22:00	불가
선입금 신청	08:00~19:00	불가
구매자료 승인/변경/취소 (당일전송 당일만기) (당일전송 익영업일만기)	08:00~22:00 08:00~15:00 (EDI 14:00까지) 08:00~20:00 (EDI 16:00까지)	불가
벤더입금	08:00~19:00	불가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고객이 은행에 등록된 연락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단, 등록된 연락처의변경 후, 은행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본점,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고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16 조(정보 제공 동의)

1차 협력기업은 이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1차 협력기업에 관한 기본정보 및 지급승인명세 등의 내역을 2차 협력기업에게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

제 17 조(약정의 체결 및 변경)

① 1차 협력기업은 이 약정과 관련한 자료를 은행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이 약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이 약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은행과 1차 협력기업 사이에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필요한 경우 은행과 1차 협력기업은 서면으로 이 약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면책)

① 제출 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1차 협력기업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② 이 약정에 따른 이용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5조 (위험부담·면책조항)」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9 조(효력)

① 이 약정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원 약정서의 약정기간까지 유효합니다.

② 원 약정서에서 정한 약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은행 또는 1차 협력기업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 약정서 및 이 약정에 의한 약정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6조 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연장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약정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약정기간 내 지급승인된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상환될 때까지 이 약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이 약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의 내용이 서로 상충 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의 순서로 합니다.

⑤ 은행과 1차 협력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정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20 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정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 지역본부 또는 1차 협력기업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1 조(기타 특약사항)

(서명날인)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은행과 구매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 년 월 일

[1차 협력기업(채무자)] : _____ (인)

주 소 :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바 본 약정을 체결함.	1차 협력기업	(인)
--	------------	-----

